옥천군 공고 제2020-722호

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년 6월 10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대형폐기물 스티커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 추가

○ 전입자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 사용 추가

○ 폐기물 배출자 생활폐기물을 종류, 성상별로 분리, 보관 추가

3. 주요골자

○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 추가
(안 제5조제4항,별표 8)

○ 전입자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 사용 추가
(안 제5조제8항~제9항)

○ 폐기물 배출자 생활폐기물을 종류, 성상별로 분리, 보관 추가(안 제5조제10항)

4. 의견제출

○ 「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0년 6월 30일까지**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 : 환경과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454, FAX : (043)731-2914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
○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·면장에게 별표 2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 금액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배출하여야 한다.

⑧ 전입자는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입한 해당 읍·면장이 발급하는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.

⑨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·면장은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⑩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·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, 생활폐기물을 종류별, 성질·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쓰레기 봉투판매업”을 “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)”를 “(쓰레기봉투 및 대형

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쓰레기봉투”를 “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쓰레기봉투를”을 “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쓰레기봉투는”을 “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.

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8]

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(제17조제3항 관련)

규격별	판매업자 공급가격	판매업자 이 윤	주 민 공급가격	비 고
1,000원권	910원	90원	1,000원	○ 1매당 가격 ○ 판 매 이 익 9퍼센트
2,000원권	1,820원	180원	2,000원	
3,000원권	2,730원	270원	3,000원	
5,000원권	4,550원	450원	5,000원	
10,000원권	9,100원	900원	10,000원	

［별지 제1호서식］

<table>
<tr><td colspan="5">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□지 정 신청서
□변경지정</td><td>처리기한
7일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신
청
인</td><td>상호(명 칭)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성명(대표자)</td><td></td><td>생년월일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주소(사무실)</td><td colspan="4">(전화번호: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영 업 소 위 치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판 매 인 구 분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변경
내역</td><td>변 경 전</td><td colspan="2">변 경 후</td><td colspan="2">변 경 사 유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「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□지정 □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옥 천 군 수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〔구비서류〕
1.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2. 예정판매업소의 약도 1부</td><td>수수료
없음</td></tr>
</table>

〔별지 제2호서식〕

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정서

판매인	상호(명 칭)	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소(사무실)	(전화번호:)		
판 매 소 위 치				

「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을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옥 천 군 수 ㊞

［별지 제3호서식］

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

지정 번호	상 호	위 치	성명	전화번호	지정(변경) 일 자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폐기물의 배출방법) ① ~ ③ (생 략)	제5조(폐기물의 배출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・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별표 2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.	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・면장에게 별표 2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 금액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배출하여야 한다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⑧ 전입자는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입한 해당 읍・면장이 발급하는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⑨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・면장은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・관리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⑩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・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, 생활폐기물을 종

	류별, 성질・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제11조(판매소의 지정) ①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	제11조(판매소의 지정)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----------.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)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한다.	제12조(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) ① ----------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----------.
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할 때에는 판매업자에게 판매 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,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.	② ----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----------.
③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	③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-------.

④ (생 략) 제17조(수수료의 부과·징수) <신 설>	④ (현행과 같음) 제17조(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③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 례 명 :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　　견